



물류비의 절감이 기업경쟁력의 관건 ②

- 산업물류 혁신대책(2002~2006) 시행 -

산업자원부 제공

Ⅲ. 산업물류 혁신 방향

기본목표

- ◇ 선진국수준의 기업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

[산업물류비 절감목표 : 12.5%(2001) → 9%대(2006)]

추진방향

- ◇ 지식기반의 소프트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물류 구조의 고도화 추구
- ◇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업종별, 지역별, 산업단지별 물류공동화를 통하여 물류 시너지효과 극대화
- ◇ 물류업계구조를 종합물류전문업체 중심의 구조로 변화를 유도하여 「One-stop」 물류서비스 체 공체계 구축

추진전략

- ◇ 체계적인 물류 표준화 사업 적극 추진
- ◇ 산업물류 정보화 기반요소 지속적 확충
- ◇ 물류공동화를 통한 업종별, 지역별 물류 최적화 추진
- ◇ 종합물류전문업 중심의 물류산업 구조 고도화
- ◇ 물류업 외국인 투자 촉진
- ◇ 물류전문인력의 육성
- ◇ 제조업에 상응하는 물류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



IV. 산업물류 혁신대책

1. 체계적인 물류 표준화 사업의 적극 추진

대내적으로 물류기능간 통합성을 확보하고 수출입 물류업무에 대한 협력 강화로 물류비 절감과 물류 업무 편리성 증진도모

□ 물류설비인증제도 도입

- 인증 대상 업체 : 표준물류기기 및 설비의 생산업체 및 사용업체
- 인증대상 물류설비

설비명	기준	적용대상
파렛트	1,100×1,100mm	평파렛트, 상자파렛트 등
포장용기	KS A 1002(포장모듈치수) T-11계열	골판지상자, Plastic Box 등
파렛트 트럭	앞바퀴와 뒷바퀴 간격 : 1,100mm	수동식·전동식 파렛트 트럭
컨베이어	진행방향의 폭 : 1,100mm	파렛트단위 이동용 수직,수평컨베이어
파렛타이저	파렛트 적재대 1,100mm×1,100mm 이동방향의 컨베이어 폭 1,100mm	기계식 파렛타이저 로봇식 파렛타이저
화물 운반차	파렛트 적재대 : 1,100mm×1,100mm	무인운반차, 수동운반차
랙(Rack)	파렛트 화물 적재공간 (폭)1,100mm 배수, (깊이)1,100mm	파렛트랙, 드라이브인랙, 이동랙, 자동창고용 랙
수송장비	적재함의 폭 : 2,280mm×2,350mm	중형(3.5~5톤)트럭, 수송용 컨테이너
물류정보기기	KS X 6703~5 물류바코드 관련기기	리더기, 디코더, 인쇄기기 등

- 인증기관 :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
- 물류인증설비 생산 및 사용 확산 방안
 - 인증설비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유통합리화자금 지원결정시 가점부여
 - 도매배송업, 종합물류업 등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사업 심사기준에 인증물류설비 사용여부 포함

□ 인증설비의 기능간 정합성확보를 위한 ULS통칙 적용 확대

- ULS통칙 제정 : 95. 12월 포장, 치수, 파렛트, 물류기기 및 수송기관 상호간의 정합성을 갖도록 표준파렛트(T-11)를 기본으로 체계화
 - * ULS(Unit-Load System : 일관수송시스템)
- ULS통칙 적용 확대를 위한 ULS 통칙개정 추진
 - 기본방향 : 운반용기(파렛트, 적재함등)와 수송수단(트럭, 기차등)의 정합성이 확보된 ULS통칙



마련

- 세부내용 : 국제규격과 부합화, 물류정보화 내용삽입, 철도 관련 내용 추가, ULS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등
- 단계별 ULS 통칙 개정방안

1단계	산업계의 ULS 사용실태조사 실시
2단계	물류통합포럼의 기술위원회 회의를 통한 최종 개정 및 보완 내용 확정
3단계	ULS 개정 연구사업 착수/수행
4단계	ULS 개정 초안 검토 및 평가회
5단계	최종 완료 및 공고(산업자원부 고시)

*표준협회에서 연구용역 실시중

- ULS 통칙 적용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실시 및 홍보강화
 - ULS 통칙적용기업에 대한 유통합리화자금 지원시 우대 조치
 - ULS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, 전파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확대 실시
 - ULS 통칙 안내서작성 배포 및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

□ 표준형 파렛트 풀(pool)제 확산

- 표준형 파렛트 사용을 제고 목표 : 27%(01) → 60%(06)
 - 파렛트 풀 시스템을 정착시켜 제조업 및 물류업체가 표준형 파렛트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
 - 이를 위해 파렛트 렌탈기업의 기능강화 추진
 - 파렛트 렌탈 회사의 표준형 파렛트 구입비의 50%이상을 유통합리화 자금으로 지원
 - 지역 거점별로 파렛트 렌탈 회사의 설립과 확산을 촉진
 - 수출입용 표준파렛트의 재수입시 면세 추진
 - 수출물품과 동시에 국외로 반출되는 파렛트는 재수입시 공파렛트로 국내로 회수될 경우 관세 부과
 - 파렛트의 동일성(identity)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표준형파렛트 반출입 총량관리제를 실시하여 면세방안 추진
- <기대효과>



렌탈비용의 30%이상 면세로 수출입 물류비 절감

<대당 파레트 면세 효과>

제조원가	관세율 (%)	세액(A)	렌탈비(B)	A/B(%)
24,400	8	1,952	6,000	32.5

* 한국 파레트 협회, 2002

· 폐기되는 파레트의 재사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됨

- T-11형 파레트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시아-호주를 통합하는 물류 협력체 구성
 - 1단계로 한·일 물류협의회 구성(1차 회의 : 2002. 3월)
 - 한·일 양국간 표준파레트의 공동 사용 방안, 물류관련 관세 장벽제거 등 물류협력 방안 모색
 - 향후, 한·일 양국간 물류관심분야에 대한 물류 협력을 위해 매년 물류협의회 개최
 - 2단계로 동북아 물류협력체를 구성하여 동북아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국제적 협의 활동 강화
 - 3단계로 한·중·일을 주축으로 아시아지역과 호주 지역을 포괄하는 아시아 - 호주 물류 협력체 구성을 주도적으로 추진
- 국제물류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 - ISO, 국제상품코드관리총회 등 물류표준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을 조사하여 업체 및 관련단체에 전파
 -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 국제물류 표준화정보 홈페이지 개설

2. 산업물류 정보화 기반요소 지속적 확충

핵심적인 물류정보화 원천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차세대 물류신기술 중점 개발

- 물류 원천 데이터 처리 기술 보급 확대
 - 국제표준 물류바코드(EAN-14) : (01) 643개사 → (06) 1,500여개사
 - 표준 전자문서(EDI) : (01) 1,590개사 → (06) 2,000개사
- 「10대 차세대 산업물류신기술」 선정 중점육성



○ 대상기술

- 냉동창고용 지게차, 디지털 피킹시스템, 로봇 파레타이저, 무인반송차, VMI, TMS, WMS, GPS 등 첨단 물류기술 및 기기

○ 선정기준 : 무인화, 자동화, 정보화, 화물 처리속도의 고속화등

○ 지원방안

- 「산업물류혁신관련 기술개발사업」 을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추가
- 기술개발 소요자금의 50%를 지원하는 방안 추진

○ 일몰제를 실시하여 첨단 물류신기술 변화 적기 수용

□ 물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원

○ 산업단지공단 종합물류정보처리 시스템 구축

- 사업목적 :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단지공단의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개선
- 총사업비 : 126억원(정부 34억원, 공단 92억원)
- 사업기간 : 2001. 6 ~ 2005. 5

'01.6~'01.12	2002.7~'03.5	'02.6~'04.5	'04.6~'05.5
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
사업 모델 수립 수배송 IT시스템개발 단계별 계획 수립 시범사업 실시 (02'1~02.6:6개월, 창원, 반월공단)	공동물류센터 설계 수배송/보관추가개발 홈페이지 개발 시범사업 실시	공동물류센터 설계 및 건립 솔루션개발 및 시스템 구축 단계별 가능서비스 제공 물류시스템 개발 (KMS, WMS, Forwarding등)	종합서비스 실시점검 수출입/조달물류향상 고도물류정보 제공 (ASP, e-MP 등)

<기대효과>

- 종합물류시스템을 통한 다단계 운송주선 관행 개선
- 산업단지 기업간 B2B 활성화 및 중장기적인 물류포탈 기반 조성

○ 물류 공공 e-Marketplace 구축

- 사업목적 : 물류산업 전체 프로세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국가 기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One-stop 물류서비스 제공
- 추진주체 : 한국무역정보통신(KT-net), 윈로시스등 SI업체와 대한통운, 한진, 현대택배등 물류업



체 공동 참여기관 13개업체

- 연차별 시스템 구축계획

연차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
추진 목표	정보전달 표준체계 구축 및 G-LogisHub 기획	G-LogisHub 시스템 기반구축	G-LogisHub의 M2M 및 해외연동 확산
개발 내용	-물류B2B 전자상거래 모델수립 -표준화 가이드라인 작성 -정보전략 ISP 작성	-물류프로세스, 전자문서 표준화 -사용자 인터페이스, 분류체계 표준화	-수출입물류와 국내물류의 연동 -무선인터넷 솔루션연계 추진 -국가간 상호연동을 위한 XML/EDI 표준화

- 소요예산(50억원) : 02(6.5억원) → 03(26억원) → 04(17.5억원)

<기대효과>

- 물류전자정보의 사용자가 확산되고, 산업별 협업을 통한 공급체인상의 낭비요인을 획기적으로 제거

3. 물류공동화를 통한 업종별, 지역별 물류 최적화 추진

업종별, 산업단지별 및 배송권역별로 공동물류화를 추진하고 통일시대에 대비 민통선내 공동물류단지 조성 프로젝트 추진

□ 업종별 물류 공동화 사업

- 기본방향 : 대형화, 전문화된 운송수단, 보관창고 및 정보처리 시스템의 공동이용
- 대상업종 : 전자, 제지, 골판지, 신발, 석유화학, 섬유, 편의점 등 7개 업종
- 추진주체 : 회주회사, 물류회사, 물류관련단체, IT회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(공동출자) 구성
- 사업추진
 - 1차로 전자제품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송수단, 화물정보처리 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통한 인건비, 수송비등 물류비 절감 추진
 - 2차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후 최적모델을 개발하여 여타 산업으로 확산
- 자금지원 : 물류공동화를 위한 차량 개선비, 정보처리시스템 구축비등 초기 투자 비용 유통합리화 자금으로 지원

<기대효과>



- 20%의 재고비용 절감, 약 2.5%의 수배송비 절감 및 운송차량의 대형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기대됨
- 운송수단과 보관창고의 대형화, 정보화에 따른 선진국수준의 물류체계 구축

□ 산업단지 공동수배송 사업

- 사업목적 :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공단의 비효율적인 물류처리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물류비의 획기적 절감
 - 사업기간 : 01. 6월 ~ 04. 12월
 - 총사업비 : 126억원(정부지원 : 34억원, 산단공: 92억원)
 - 사업내용
 - **단지별 공동물류센터**를 건립하여 단지내 기업 화물의 공동보관 서비스 제공
 - 단지내 **공동 수배송용 서틀차량 운행** 및 지게차, 표준형 파레트등 물류장비 임대
 - **종합물류정보처리시스템**을 통한 수출입화물처리 대행 서비스, 택배연계서비스 등 **토탈 물류서비스** 제공
 - 공동화 시범사업 실시
 - 대상공단/사업기간 : 시화, 창원 공단/02.1월~6월
 - 2004년까지 **쏘 산업공단**으로 공동수배송사업 확대 추진
- <기대효과>
- 연간 **1,000억원의 물류비 절감**(산업단지내 기업 10%참여시)
 - 특히,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물류비가 높은 공단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
 - 국내물류에서 수출입물류에 이르는 **토탈물류서비스**를 one-stop으로 제공

□ 10대 도시권 배송권역별 중소기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

- 사업목적 : 도시권역별 중소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입지 확보 지원
- 대상권역 :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마산, 춘천, 청주, 제주 등10개 도시권역
- 추진방안
 - 기본방향 : 물류시설의 대형화, 전문화, 공동화를 통한 기업간 협업화



- 도시권역별 물동량 및 입지여건 분석 및 공동집배송센터 규모결정
- 배송조건과 지역적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공동물류 조합 구성하여 운영
- 10대 도시상권별로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 - 진입도로 건설비의 50%(지방비 50%), 부지구입비(30%)를 정부에서 지원(건설교통부)
 - 창고건립비 유통합리화 자금으로 지원 : 개인한도 20억원

<기대효과>

- 지방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물류시설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
- 대형화, 전문화된 물류시스템의 운영으로 물류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, 단위 운송비등기업물류비의 절감
- 생산자와 소비자의 최적거리에 위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**유기적인 실시간 배송시스템** 운영

□ 민통선內 공동집배송단지 조성

○ 사업목적

- 1차적으로 수도권 북부의 물동량을 소화하고 장기적으로 **동북아 물류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거점 확보**

○ 대상지역 : 민통선內 군사작전에 영향이 적은 경의선 인접 지역

○ 대상사업 : 상품의 형태가 균일한 제지업, 문구, 잡화류등

○ 단계별 추진방안

- **1단계** :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

- 국방부, 통일부, 건교부,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민통선 집배송단지 개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

- **2단계** : 부지 및 사업자 선정

-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으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최적부지 및 사업자를 민통선 집배송 단지 개발 위원회에서 선정

- **3단계** : 기반시설 구축지원

- 단지운영에 필수적인 인입도로, 철도인입선, 정보처리시스템 등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추진

<기대효과>

- 지가상승에 따라 제조업의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물류부지확보 문제 해결 지원



- 장기적으로 육로를 통한 남북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반구축

4. 종합물류전문업(제3자물류) 중심의 물류산업구조 高度化

제조업, 유통업 등 물류수요자의 needs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및 기업의 물류혁신의 핵심 주력업종으로 육성

□ 기본방향

- 제조업 자가물류 分社(spun-off)를 확산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제조업 및 유통업의 물류아웃 소싱 촉진
- 과학화, 정보화, 대형화, 자동화, 다기능화된 물류시스템을 보유한 물류 전문기업의 성장기반 조성
- 종합물류전문업체의 서비스 형태
 - 수배송, 보관·재고관리, 하역, 물류정보처리 등 제반 물류 기능을 통합한 **one-stop 종합물류 서비스 제공**
 - 내수물류와 수출물류를 동시에 수행하고 고객인 하주업체의 요구에 대하여 맞춤물류(customized) 서비스 제공

□ 『종합물류 전문업체』 기준정립 및 금융, 세제 지원 확대

- 자본금, 물류관리사 보유수, 물류 표준화장비 및 첨단물류장비 가동율, 물류정보처리 시스템 운영 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마련
- 종합물류전문업체에 대한 유통합리화자금 **동일인 한도 지원범위 확대**
(현행) 동일인 한도액 20억원 → (확대) 동일인 한도액 50억원
-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시 우대 대상에 물류산업(제조업관련 서비스업) 포함
- 물류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**세제 지원 추진**
 - 하주업체의 영업용 창고시설을 물류전문업체에 매각시 하주업체의 양도소득세감면 및 물류업체의 투자세액공제 및 등록세 감면 추진
 -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
 - 종합물류전문업체의 신기술 도입시 법인세, 소득세 공제 추진
 -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



5. 산업물류업 외국인 투자 촉진

선진물류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2006년까지 5억불이상의 물류기업 투자유치의

□ 물류투자 target 기업 선정 집중관리

- 선정기준 : 자본규모 100억불(USD)이상, 위성통신 GPS 보유 등 첨단 물류기술 보유 수준 등
- 대상기업
 - 테스코사, UPS사, Fedex사, Excel Logistics사, Schneider National사, TNT Logistics사, 사가와 규빈 등 선진 물류업체
- 물류투자 대상기업 투자촉진 활동 전개
 - 물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**대륙별 로드쇼** 매년 1회 개최
 - 관련단체 : 해외 현지 물류기업 사정에 정통한 유통정보센타 등
 - 대상지역 : 유럽, 미주 및 일본, 호주 등 아시아 권
 - 재외공관과 KOTRA 무역관의 target 물류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**network**을 구축하여 분기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
 - 대불, 평동, 진사등 **외국인 전용공단에 외국물류기업의 입주**를 허용하여 투자가에 대한 입지지원 강화
 - 상공회의소 및 대학교수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외국물류업체의 투자촉진을 위한 TF team 구성하여 적극적 활동전개
 - 딜로이트, KPMG, 노무라 등 해외 유명 컨설팅사와 연계한 [투자알선사업] 에 물류부문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
- 주요 다국적 물류기업의 **아시아 물류센타 유치**시 법인세, 종합 토지세 등 **세제감면** 추진

□ 외국인 투자 여건조성을 위한 특별 세제지원 실시

-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종 : 창고업, 운송업, 도매배송업, 공동 물류업, 종합물류업 등
- 조세감면내용
 - 법인세 또는 소득세·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
 - 7년간 100%, 다음 3년간 50% 감면



- 취득세·등록세·재산세·종합토지세
 - 5년간 100%, 다음 3년간 50% 감면
-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감면규정 개정(2002. 1월)

6. 물류전문인력 양성

물류현장 관리능력과 기획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물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강화

□ 유통·물류 특성화 대학의 지정

- 지정대상 : 기존대학 중 유통물류 관련학과는 없으나 유통물류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4년제 대학
- 지정기준 : 물류전공교수 보유수, 외국대학 및 물류기업과의 교류실적, 물류관련 논문발표수 등
- 운영방안
 - 네덜란드, 미국, 싱가포르 등 물류선진국의 물류관련학과와 교류프로그램 운영 및 물류 신기술 연구비 지원
 - 다국적 물류기업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방학기간 인턴사원제도 운영토록 운영비 지원 방안 강구
 - 방학기간중 지정 도매배송업체 및 우수 종합물류 전문업체 근무시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 추진

□ 물류학과의 방송통신대학교 정규과정 설치 추진

- 설치목적 : 물류업 종사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물류인력의 고급화, 선진화 도모
- 설치과목 : 물류현장의 노후하우와 물류기획 및 신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과목 설치
- 설립요건 : 교수요원 및 피교육자 시험장소 확보방안, 피교육자의 방송청취 가능성 등
- 관련부처 협의 : 물류학과 방통대 설치를 위해 교육인적 자원부, 방송통신대학교 등과 적극 협의 추진

□ 사이버(Cyber) 물류교육 시스템 구축

- 사이버 물류교육 전담기관 지정
 - 지정 기준 : 시스템 운영인원 및 ASP(application service providers) 보유내용, 자본금, 사이버 물류기술 개발 실적 등



- 지정대상 : 지정기준을 충족한 국내기업 또는 합작기업
- 지정기관의 교육장비 구입비, 콘텐츠 개발비 등 초기 투입 비용 지원
- 효과적인 사이버 물류교육을 위한 관련 핵심 교육기술 개발
- 온라인 물류교육, 모바일(mobile) 시스템에 의한 물류정보 제공 등 실무와 이론의 실시간 전파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
- 이를 위해 온라인 모바일 교육기술에 대해 "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" 지정 추진

7. 물류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적 지원 및 산업물류 데이터 인프라 구축

산업지원측면에서 제조업에 상응하는 제도적 정비로 親산업물류 환경기반 구축과 물류업계의 사기 진작 도모

□ 전기요금 체계조정

- 현행 창고, 운수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산업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추진
- 관련법령 : 전기사업법 시행규칙

□ 세제지원 추진

- 물류업 초과근로 소득세 경감
 -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류업 종사자의 야간근로, 휴일근로 등에 대 제조업과 같이 비과세 추진
 - 관련법령 :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
- 인력개발비 세액공제
 - 세액공제를 받고있는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물류분야를 추가하여 일정비율의 세액공제를 추진
 - 현·세액공제 적용 인력개발비는 이공계, 기술연수,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대학등 전문연구기관 위탁훈련비등에 한함
 - 관련법령 :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
- 물류업으로 사업 전환 중소기업 법인세, 소득세 감면
 - 법인세, 소득세를 과세연도 개시일 5년 이내 50% 감면



- 관련규정 :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1조

□ 물류시설용지 조성원가 분양

- 산업공단내 물류시설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물류시설용지의 조성원가 분양
 - 산업단지공단의 물류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공장용지에 비해 약 2.5배 수준임
- 관련법령 :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

□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물류업체 취업

- 물류현장의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생의 물류업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
 - 취업대상업종 : 화물운송주선업 및 창고업, 도매배송업 등
- 관련법령 :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제4조

□ 물류업의 중소기업범위 확대

- 영세한 창고업·운송관련 서비스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지원등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물류업 중소기업범위 확대
 - (현행) 상시고용인 100인 미만, 자본금 100억원 이하
 - (개선) 상시고용인 200인 미만, 자본금 200억원 이하
- 관련법령 :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□ 기업물류비 산정기준 정립

- 물류업계, 하주업계 및 학계와 단체가 참여하는 물류비 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요소별 기업 물류비 기준을 결정하여 공표
 - 대부분의 화주와 물류사간 물류비에 대한 계산기준 부재로 **물류사와 하주업체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**으로 작용
-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기준 및 단위당 표준단가, 직접비와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의 표준원가 배분율, 기업의 기본이익율등
- 중소기업물류업계의 경영난을 해소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외국의 물류업체와의 경쟁력 확보기대



□ 기업물류비 비용구조 DBMS 구축사업 추진

- 기업물류비에 대한 상시 기초자료 확보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기업물류정책 수립
- 이를 바탕으로 기업물류 통계연감 발행

*DBMS : Data Base Management System

<2006년 산업물류의 모습>

□ 거시적 모습

- ◇ 화물, 정보의 막힘 없는 흐름으로 작지만 탄력적이고 강력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 마련
- ◇ 고도화, 국제화된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국내외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경제 활동 지원
- ◇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물류비 구조의 획기적인 개선

□ 미시적 모습

개선요소	개선기준	2001	2006
산업물류비절감	매출액대비 물류비중	12.5%	9%대
	매출액대비 절감액	-	43조원
물류표준화	표준 파레트 보급율	27%	60%
	국제표준화 활동(회/연)	2	4
물류정보화	물류바코드 보급확대	643개사	1,500개사
	표준전자문서 보급확대	1,590개사	2,000개사
	물류B2B네트워크 구축	-	1식
물류공동화	권역별 물류공동화	-	10개권역
	산단공 공동수배송	-	1000억원 물류비 절감
	공동집배송센터	6개소	16개소
종합물류 전문업체 육성	단일물류업체 처리기능	2~4개 기능	소기능
물류업 외국인 투자유치	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규정개정	-	5억불이상
물류 관련 제도개선	물류업 운영여건 개선	-	14개 제도개선